

상주시 공고 제2022 - 645호

「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10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(보건복지부)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미흡한 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변경(안 제4조제3항)
- 나. 띄어쓰기 준수(안 제10조제2항)
- 다.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기한 변경(안 제11조제1항)
- 라. 문맥 수정(안 제12조 제1항, 제3항)
- 마. 조례 제명 변경으로 인한 반영(안 제18조)

3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0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일반우편: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
- 2) 전자우편: dotorihj@korea.kr
- 3) 팩스: 054-537-6699

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강증진과(☎054-537-5251)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 →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 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